

[변경 대비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펀드명	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변경서류	집합투자규약
변경사유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직판클래스 삭제
효력발생일	2024년 10월 04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클래스 삭제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11. (생략)</p> <p>12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13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11. (현행과 동일)</p> <p>12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13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</u></p>

		<p>14. <u>Class J-e 수익증권</u> :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u></p> <p>15. <u>Class J-Pe 수익증권</u> :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 <p>16. <u>Class J-P2e 수익증권</u> :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	<p><u>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</u></p> <p>14. <삭제></p> <p>15. <삭제></p> <p>16. <삭제></p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직판클래스 삭제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3. (생략)</p> <p>14. <u>Class J-e 수익증권</u></p> <p>15. <u>Class J-Pe 수익증권</u></p> <p>16. <u>Class J-P2e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3. (현행과 동일)</p> <p>14. <삭제></p> <p>15. <삭제></p> <p>16. <삭제></p> <p>②~⑤ (현행과 동일)</p>
제39조(보수)	직판클래스 삭제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</p>

		<p>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3. (생략)</p> <p>14. <u>Class J-e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65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75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15. <u>Class J-Pe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65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0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16. <u>Class J-P2e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65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	<p>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3. (현행과 동일)</p> <p>14. <삭제></p> <p>15. <삭제></p> <p>16. <삭제></p>
<부칙>		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 칙 15 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<u>투자신탁은 2024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<끝>